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3. 3. 21.(화)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 확인

○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⑥ 의결사항

가.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2023-08-013)

○ (주)조선방송의 2023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별지 <1안>의 사무처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의견 요약 >

(위원장) 조선방송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외부진단에 대한 위원간 의견을 고려, 매년 공정한 공모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프로그램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야 한다는 심사위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미흡 시 조건으로 상향될 수 있음을 감안할 것 조선방송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별지 <1안>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자 함

(부위원장) 방송법에 따른 재승인 기준, 위원회 재승인 계획, 심사위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고려 조선방송 재승인은 타당하며, 위원회 재승인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조건부과 최소화에 따라 별지 <1안>에 동의함

(김현 상임위원) 조선방송이 방통위에 제출한 공정성 진단 보고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기관은 연구실적과 데이터가 축적된 미디어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므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재승인 조건이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심사위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을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공정성 진단 관련 사항을 재승인 조건에 부과하는 별지 <2>안이 되어야 함

(김효재 상임위원) 조선방송은 재승인 심사위 평가결과 1,000점 만점 중 689.42점을 획득하고 중점 심사항목 과락도 없으므로 별지 <1안>에 찬성하며, 재승은 유효기간 4년에 동의함

(김창룡 상임위원) 조선방송은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 교육을 의무화 하고 윤리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할 것을 권고하며, 위원회 사무처는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자체 점검하여야 함 조선방송이 공정성·편향성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별지 <2안>을 택함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8-014~027)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최윤정 인터넷이용자 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되 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주)휴렌에 13,038,5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사이버프리, (주)아람솔루션, (주)떡깨비, (주)피유엠피, (주)지바이크에 각각 150만 원, (주)에이치앤아이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2023-08-028~031)

-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을 곽진희 방송기반 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주)씨제이이엔엠, (주)우리홈쇼핑, (주)서울경제티브이에 각각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머니투데이방송에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박명진 통신분쟁 조정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

8] 기타사항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기로 함

6. 폐 회 (11:12)